



# 교육공무직법 해설집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Q1

## 현재도 '교육공무직'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정확히 교육공무직원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공무직원



2012년 서울시에서 상용직·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새로운 직제의 명칭을 '공무직'으로 정의함.

A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무기계약직 전환, 호봉제 도입(1~33호봉), 복지포인트 및 수당체계등 고용의 질이 개선되었습니다. 이후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와 같은 정규직 모델을 도입하였습니다.

2011년 광주에서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가 시작되었고, 2013년 울산에서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의 제정으로 '교육공무직원'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전국 14개 지역에서 '교육공무직의 채용과 정원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 Q2

## 현재도 명칭은 교육공무직원인데 법으로 제정되면 진짜 정규직이 되는 건가요?

A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조례를 통해 '교육공무직원(교육실무직원)의 채용, 무기계약전환, 정원관리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는 학교회계직원, 00보조, 00여사 등 규정이 명확치 않고, 교육공무직에서 제외되는 직종도 교육청마다 달라 차이와 차별이 존재합니다.

정규직 공무원의 신분은 법과 정부시행령으로 제정되어 있어서 지역별 편차, 직무별 처우의 차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적용되는 법률이 없습니다. 교육공무직법이 제정되면 법에 근거한 정규직이 되는 것입니다.

아줌마~

00여사!  
이거 좀 갖다줘요!



# Q3

## '무기계약직'과는 무엇이 다른 건가요?

A

'무기계약직'은 법적으로 정해진 용어가 아닌 단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직원'이라는 뜻일 뿐입니다. 교육공무직법은 교원, 공무원과는 다른 형태의 정규직입니다.

교육공무직법은 교육공무직원의 교육부·교육청 채용, 호봉 체계 도입, 교직원으로서의 법률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시·지속적인 업무에는 기간제, 간접고용 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교육기관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교육공무직원을 채용할 때 만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으로 직접 채용해야 하며, 교육부 및 교육청 소속의 교직원으로서 공무원과 차별 없이 신분과 처우가 보장됩니다.

**호봉제도입으로 근속연수의 제한없이 호봉표에 의한  
기본급 인상이 되는 진짜 정규직이 됩니다.**

- 고용수준은 사립학교에도 적용됩니다.

# Q4

## 교육공무직원은 누가 해당되나요?

A

전국 초·중·고등학교(국·공·사립), 단·병설 유치원(국·공립)에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원칙적으로 모두 해당됩니다.

자세한 적용 대상은 대통령령(정부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20대 국회가 법 제정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결정적으로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 교육공무직법 제정에 의지가 있는 정부로 정권을 교체해야 합니다.

### 학교 곳곳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 급식실



▲ 행정실



▲ 교실



▲ 교무실



▲ 도서관



▲ 유치원

# Q5

## 임금은 얼마나 달라지나요?

A

교육공무직법은 교육공무직원의 고용과 처우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내용입니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임금체계는 법이 제정된 뒤 시행령을 제정할 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얼마가 인상된다'는 보수액을 정확히 단정짓기는 힘듭니다. 우리의 힘과 요구수준에 따라 정부 시행령의 수준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학비노조는 교원 및 공무원의 80% 이상(월 평균 40~80만원 인상) 수준은 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차별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기본급	호봉간격 평균 15만원	근속수당 1년 2만원
정액급식비	월 13만원	월 8만원
명절상여금	기본급의 60%씩, 2회 (약 80~173만원씩)	연 70만원 (35만원 x 2회)
정기상여금	평균 연 200만원	평균 연 50만원

▲ 근속 10년차 비교, 9급 공무원, 비정규직 조리실무사 기준(시도별 평균액으로 계산)

# Q6

## 지난 19대에서도 발의되었지만 제정까지는 힘들었는데, 이번 20대 국회에는 실현가능성이 있나요?

A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2012년 '교육공무직법'(유기홍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으나 여대야소의 상황에 여당 및 박근혜 정부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교육공무직법을 강하게 반대해 왔습니다.

이러한 악조건에서도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교육공무직법 제정을 위해 투쟁해 왔습니다. 대규모상경투쟁, 범국민 서명운동과 국회압박, 총파업투쟁, 온프라인 실천활동 등을 통해 교육공무직법 제정을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 내었습니다.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TV토론회를 기억해 보십시오.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과 호봉제 예산도입이 토론주제가 될 정도였습니다.



▲ 2012년 대통령 선거 TV토론회

20대 국회는 정권심판의 여론속에 16년만에 만들어진 여소야대의 정치지형입니다. 또한 내년 2017년은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해입니다.

대통령선거는 사회의 주요문제들과 진보적 이슈들이 봇물처럼 터져나오는 시기입니다.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사회적의제로 만들어 법제정에 유리한 정치지형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는 이때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까지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문제를 당론으로 채택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37만 학교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사회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정권을 획득하려면 이 문제를 풀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교육공무직법  
제정하세요!**



# Q7

## 교육공무직법 제정에 의지를 가진 정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그럼 우리는 무엇부터 하면 될까요?

A

교육공무직법 제정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채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근본적 사회제도 변화의 시작입니다. 법의 적용대상은 최소 14만명, 소요예산도 1조원이상 필요한 대형국책사업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주도로 추진해야만 하며 진보적 정권교체가 필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당사자인 우리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힘과 의지가 모여져야만 제정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투쟁을 동력으로 진보·개혁적 야당을 강하게 견인하여 진보적 정권을 만들어내고, 보수 정당까지 동의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 **이제 정규직 전환을 위한 마지막 단추를 끼어야 합니다.**

다가올 11월 12일 민중총궐기에서부터 우리의 힘을 모아냅시다. 37만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단결된 힘과 위력을 만방에 과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공무직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에 가족, 친지, 교직원 모두 동참케 합시다. 그 힘으로 노동개악, 노동자탄압하는 정부를 심판하고 2017년 정권교체를 통한 교육공무직법 제정까지 힘차게 나아갑시다.

**비 정 규 직 철 폐 ! 교 육 공 무 직 쟁 취 !**

마지막  
단추!  
걸어!